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28호
- 나. 제 출 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 2. 제안이유

청년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 향상과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고용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향상을 위해 응시료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3항)

## 4. 관계법령

- 가. 「청년기본법」 제4조제1항
- 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제1항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향상과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전임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붙임 1. 관계 법령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청년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p>	<p>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학                      시험·자격시험 등 응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